I. 대한제국의 성립

- 1. 대한제국의 성립 배경
- 2. 고종의 황제즉위 과정
- 3. 대한제국의 성립과 열국의 반응

I. 대한제국의 성립

1. 대한제국의 성립 배경

1) 청일전쟁 이후 동아정세의 변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거소를 옮기자(1897. 2. 20) 皇帝即位를 요청하는 상소가 점차 조야로부터 쇄도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연호를 변경하여 나라의 위엄을 높이고 자주독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稱帝建元을 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해 8월에는 얼마전 일본의 위압 하에 정해져 1년간 쓰였던 建陽이란 연호를 光武로 변경하고, 10월 12일에는 마침내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였다. 이어 다음날 조정에서는 조선이란 국호를 대한으로 개정하여 대한제국의 탄생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500여 년간 지속된 조선왕조가 막을 내리고,한국사상 최초로 황제의 나라 大韓帝國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1)

¹⁾ 이 글의 작성에는 아래의 글이 참고되었다.

宋炳基、〈光武改革研究-그 性格을 中心으로〉(《史學志》10, 1976).

姜萬吉,〈大韓帝國의 性格〉(《創作과 批評》48, 1978).

權錫奉,〈清日戰爭以後의 韓淸關係의 研究(1894-1899)〉(《清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强》,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李求鎔、〈大韓帝國의 成立과 列强의 反應〉(《江原史學》1, 1985).

李玟源,〈稱帝論議의 展開와 大韓帝國의 成立〉(《清溪史學》5, 1988).

^{----, 〈}大韓帝國의 成立過程과 列强과의 關係〉(《韓國史研究》64, 1989).

^{———, 〈}大韓帝國의 改革과 그 實態-政府와 獨立協會의 皇權認識과 關聯하 여〉(《韓國民族運動史研究》9, 1994).

月脚達彦,〈大韓帝國成立前後の對外的態度〉(《東洋文化研究》1, 學習院大學 東洋 文化研究所, 1999).

奥村周司, 〈李朝高宗の皇帝卽位について - その卽位儀禮と世界觀 - 〉(《朝鮮史 研究會論文集》33, 1995).

대한제국의 등장은 우리 나라가 事大朝貢國인 왕국에서 자주독립적인 황제의 나라가 되었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한국사의 전통적인 흐름과 개항 이후 접목된 세계사적 흐름이 합류하여 나타난 역사적 격랑의 중요한 귀결점이다. 그것은 또한 이후에 전개된 한민족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2) 다시 말해서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중국 중심의 冊封體制에서서구 중심의 萬國公法體制로 확고히 편입했음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획기적 사건이었고, 대내적으로는 王國인 조선과 民國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이에 존재한 근대의 '자주독립'한 전제군주국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선포된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하게 위기가 연출되던 때였다. 항일운동을 펼치던 전국의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에 의해 초토화된 상태였고, 서울의 궁정에서는 일본의 군인과 경찰, 낭인배 등이 왕비를 참혹하게 살해하여 그 시신을 불태워 버리는 만행을 자행하였는가 하면, 신변의 위협을 견디다 못한 고종이 궁녀의 가마에 숨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기막힌 사태가 불과 1~2년전에 연출되고 있었다.

환궁한 그해에도 고종은 신변이 불안정하였다. 국가재정은 고갈되고, 군대와 경찰은 국내치안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만큼 조직이 무너져 있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그야말로 瀕死의 지경이었다.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급전직하로 추락해 가던 시기에 도리어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이다. 대한제국이 등장한 내외적 배경은 무엇인가. 멀리는 조선 후기 이래 지속된 華夷觀의 변화, 가까이는 청일전쟁이래 전개된 동아의 국제상황 변화이다.

황제란 하늘의 명을 받아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전근대의 동양사회에서는 중국의 천자만이 황제를 칭할 수 있었다. 즉 중국 중심의 화이관이지배하던 동양권에서는 모든 나라가 천자의 제후격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어디까지나 중국의 일개 藩屬國이었다. 각국은 중국에 事大朝貢을 하였고, 연호도 중국의 그것을 사용하였다. 3) 그 결과 조선에 이르기까지 역대 한

²⁾ 宋炳基, 위의 글.

³⁾ 이를 '天朝禮治體系'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黄枝連,《亞洲的華夏秩序-中國 與亞洲國家關係形態論》・《東亞的禮義世界-中國封建王朝與朝鮮半島關係形態

국의 왕조는 중국황제의 책봉을 받는 나라로서 자주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일반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사고가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서이다. 17세기에 들어서 명나라가 청나라로 교체되고 서학이 전래되자 조선 조 지식인들의 세계관이 변해갔다. '만주의 오랑캐족'이 한족왕조를 무너뜨리 고 중원을 차지하여 고도의 문물을 향유하고 있다는 현실은 물론이고, 동양 외에도 고도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서양에 존재한다는 것, 나아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한 개의 위성 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은 조선의 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충격이 일부 지식인들에게는 자의식 형성에 중요한 계 기가 되었다. 즉 내 나라 조선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 주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집중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 나라의 역사·지리·언어·사상 등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갔다. 이들에게서 발해의 역사를 신라의 그것과 함께 우리 역사의 정통으로 보아야 한다4는 인식이 팽배함은 물론, 중국도 지구상의 하나의 나라이고 조선도 똑같은 하나의 나라라는 인식이 등장하였다.5) 그러나당시 정치권 주류측의 인식은 그렇지 않았다. 현실적으로는 小中華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청국의 영향력도 상존하였다.6)

이후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지식인들의 세계관은 또 한차례 변화를 맞게 된다. 개화사상가들이 등장하면서 청국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요구가 일부의 관료에게서나마 서서히 무르익어 갔고, 거기서 대두한 것이 왕을 황제로 높이고 연호를 독자적으로 쓰자는 주장이었다.7) 그러나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 거문도사건(1885) 등을 거치면서 청국이 조

論》(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1994) 등을 참조.

⁴⁾ 韓佑劤・李成茂編,《史料로 본 韓國文化史-朝鮮後期篇》(一志社, 1985), 531쪽.

⁵⁾ 李瀷、《星湖傳說》、〈天地門-分野〉、

⁶⁾ 宋贊植、〈星湖의 새로운 史論〉(李佑成・姜萬吉編、《韓國의 歷史認識》下, 創作 과 批評社, 1976).

李萬烈,〈17・8世紀의 史書와 古代史認識〉(위의 책).

⁷⁾ 李玟源, 앞의 글(1988).

선에 대한 내정개입을 강화해 감에 따라서 그러한 주장은 용납되기 어려웠다. 한 예로 임오군란 2개월 후 조청간에 체결된 무역장정은 마치 종속관계의 文證 같았다.8)

청국이 이렇게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해 간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서구 열강이나 일본이 한반도를 장악한다면 북경이 위태로워진다는 안보상의 판단 때문이었다. 脣亡齒寒의 논리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속된 청국의 간섭은 결국 조선이 청국과는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서구 열강과는 근대적 조약체결을 통해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대등한국가관계를 유지해 가는 기이한 모습을 갖게 하였다. 한쪽으로는 만국공법이지배하는 세계질서 속에, 다른 한쪽으로는 전근대적 책봉체제의 굴레에 묶여었었던 셈이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결과 조선을 구속하던 책봉체제의 굴레는 벗겨졌다. 강화의 결과 체결된 시노모세키조약(下關條約, 1895. 4. 17)에서 '청국은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하고, 장래 조선의 청국에 대한 貢獻·典禮를 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였다. 이후 청국의 조선에 대한 압제도 현실적으로는 사라졌다. 대한제국의 등장은 이처럼 의식상으로는 조선인들이 지니고 있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변하고, 현실적으로는 청일전쟁의 결과 조선이 청국의 구속을 벗어난 상황에서 가능했다.

2) 조선의 위기와 정부의 대응

시노모세키조약에서 청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이 부인된 것 자체는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외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청국의 구속에서 벗어난 것만으로 조선이 명실상부하게 자주독립국이 되었다면 구태여 그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었을 것이다.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를 추진한 배경에는 별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본과 러시아의 압제, 그리고 고종의 거듭된 신변위기로 인해 형성

⁸⁾ 즉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1882. 10. 4)을 말함. 이에 대해서는 金鍾圓,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歷史學報》 32, 1966), 120~169쪽을 참조.

된 조야의 국권과 군권의 확립에 대한 절실한 열망이었다.

청일전쟁의 결과는 조선이 청국의 간섭을 벗어나게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을 더 위기에 빠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목전에다가왔다. 조선을 지배하려는 일본의 목표 때문이었다. 전쟁 초기부터 고종이나 대원군, 대신들 모두는 서울을 장악한 일본군의 인질로 전략하였다. 혹여 조선에서 일본에 대항하는 집단과 인물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보복이 가해졌다. 그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초토화 작전이었고, 을미사변(명성황후시해사건: 1895. 10. 8)의 만행이다.9)

얼마 후 조선은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피신에 의해 가까스로 위기를 피하였지만 이후로도 어려움은 지속되었다.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일간에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조선의 국권은 일본과 러시아 양국에 의해 급속히 실추되어 갔기 때문이다. 대한제국 선포를 전후하여 한국에 관해 3차에 걸쳐 체결된 러・일간의 협정(웨베르-小村覺書, 로바노프-山縣議定書, 로젠-西協定)이 무엇보다 그 점을 잘 보여 준다. 러・일 양국간에는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이 형성되어 대외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이들 협정의 조문에 보이 듯 고종의 신변보장 문제나 정부대신들의 인사문제, 나아가 군사와 재정권 등이 모두 양국의 견제 하에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다.10)

이렇게 일본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가하는 압제는 고종과 정부측이 안고 있던 가장 큰 부담이었다. 그 외에도 산발적으로 야기되고 있던 국내 각 집단의 반정부·반개화운동 등도 정부측에는 큰 부담이었다. 일례로 유생과 농민층은 외압 하에 있던 정부대신이나 지방에 파견된 관료들을 외세의 앞잡이로 보고 적대행동을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반면 정부는 이들을 '폭도'로보았고, 때로는 외압에 의해서 군사와 경찰을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하였다. 외압에 대해 공동대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국의 군민들끼리 출혈을 보이던 형국이었다.

⁹⁾ 朴宗根著・朴英宰譯, 《淸日戰爭과 朝鮮》(一潮閣, 1988).

李玟源、〈閔妃弑害의 背景과 構圖〉(崔文衡外、《明成皇后弑害事件》, 民音社, 1992).

¹⁰⁾ 李玟源,《俄館播遷 前後의 韓露關係 1895~1898》(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기란 기대난망이었다. 군사·재정적 기반은 무너져 가는 데다 관료조직은 와해되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국제정세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안팎의 압력에 직면하면서 고종과 정부는 '以夷制夷'식의 다변외교와 이권양여를 통한 외원모색, '상징(물)의 조성'을 통한 자주독립 의식의 환기, 언론 및 집회의 지원을 통한 국권의식 고취와 배외운동 등으로 대책을 수립해 갔다. 여기에는 관료와 재야의 신지식인, 도시민 등 고종과 정부의 입장을 보다 잘이해할 수 있던 집단의 호응이 따랐다.11)

그러나 외교적 대응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각국의 압력에 의해서 기대했던 성과는커녕 손실만 커 갔다. 각국 모두가 막강한 무력과 경제력, 정보력을 바탕으로 내정개입을 해 오는 상황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거의 뒷받침되지 않은 채 '도덕적 차원'의 외교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밖으로 고립무원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본 것이 있었다. 독립문·독립관·독립공원 등을 건립하거나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등을 통해 세계의 흐름과 정세를 알리고, 국권의 자주와 나라의 독립에 대한 관료와일반의 의식을 환기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들 모두 국권의식의 고취에 중요한 목적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아관파천 수개월 뒤에 독립문을 건립하기로 한 고종의 결정에 대해 다음 과 같은 내용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오늘 국왕이 서대문 밖 영은문 터에 독립문을 건립하기로 정했다는 사실을 경하한다. …이 문은 다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러시아로부터 그리고 모든 구주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The Independent, 1896년 6월 20일, 논설).

요컨대 독립문은 청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것을 상징하는 기념물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자는 의미의 기념물

¹¹⁾ 李玟源, 앞의 글(1994).

이었다.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도 넓게 보면 이들과 맥락이 같다.12) 청일전쟁 이후 청국세력의 철수, 그 이후 한반도 주변에 조성되어간 러・일간의 세력균형과 러・일 공동의 조선에 대한 압제, 그리고 국권의 자주에 대한 관민의 인식의 확대는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의 중요한 내외적 배경이었다. 고종과 정부측으로서는 청일전쟁・아관파천・환궁을 거치면서 청국・일본・러시아의 일방적 구속을 벗어나 잠시 운신의 폭이 넓어진 상황에서 택한 조치였다.

거듭 강조하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함께 있었다. 첫째는 중국에 대한 사대종속 관념을 탈피하자는 것, 둘째는 청일전쟁 이후 더욱 실추된 군주의 권위와 권력을 회복시키자는 것, 셋째는 일본과 러시아 등 모든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이루자는 갈망이 그것이다. 환언하면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군주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추락한 나라의 자존심도 복구하고 무너져 가는 국가체제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3)

2. 고종의 황제즉위 과정

1) 황제즉위의 논리

대한제국의 등장에서 핵심은 고종의 황제즉위와 국호의 제정이다. 그렇다면 군주를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강화하자는 것과 황제즉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 국가체제를 강화하자는 목표가 황제즉위로 연결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황제가 없으면 독립도 없다!'는 국민 일반의 인식 때문이다. 당시 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중국 중심의 화이관에 입각한 세계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다시 말해 황제의 나라는 자주독립한 나라

¹²⁾ Vipan Chandra, *Imperialism, Resistance, and Reform in late Nineteenth Century Korea: Enlightment and the Independence Club,*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8, pp.15~16.

¹³⁾ 李玟源, 앞의 글(1994).

이고, 왕의 나라는 자주독립한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조선이 개항한 이래 대한제국이 선포되기까지 고종의 황제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야에서 누차 제기된 것이다.

최초로 이를 주장한 인물은 金玉均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갑신정변 당시 청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조선국왕을 청국황제와 동 등한 지위로 격상시켜 자주독립의 상징으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1) 그 러나 갑신정변의 실패와 함께 김옥균 등의 이러한 시도는 좌절되고, 오히려 청국의 내정간섭만 확대시켰다. 그후 1892년 朝墺修好通商條約을 체결·비준 할 당시 양국 관계자 사이에 언급된 바 있고, 1894년 일본이 개혁을 명분으 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당시에는 주한일본공사 오도리 가이스케(大鳥圭介) 도 일시 꺼냈다가 유야무야 된 적이 있었다.2)

이후 을미사변 직후의 살풍경한 분위기 하에서도 이 일은 내각에서 거론되어 '일사천리'격으로 가결을 보기까지 하였다(1895. 10. 15). 즉 황제와 군주의 위치는 서구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 일반 국민은 '황제가 없으면 독립도 없다'는 생각들이니 황제즉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3) 그러나 러·미·불측의 외교관들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제동을 걸고나왔다. 환영해 마지않아야 할 고종도 이를 거부하였고 내각의 인사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았다. 그러자 얼마 후 일본공사는 이 일의 추진을 중지하도록조선의 대신들에게 '권고'하였고, 결국 황제즉위건은 무산되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고종의 황제즉위건은 조선과 일본 양쪽에서 때때로 제 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조선측 인사들은 자주독립의 인식을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특히나 을미사변 이후에는 왕비를 잃은

^{1)《}駐韓日本公使館記錄》7,〈機密本省往復〉(國史編纂委員會, 1989, 明治 30년 10 월 25일 機密第71號 皇帝位號ノ起因ニ幷其承諾ニ關スル意見.

黄 玹、《梅泉野錄》上(韓國學文獻研究所編,《黃玹全集》下,亞細亞文化社,1978), 993~994等.

²⁾ 위와 같음.

³⁾ 尹致昊,《尹致昊日記》4(國史編纂委員會, 1975), 74~75쪽.

^{4) 《}駐韓日本公使館記錄》4,〈機密通常和文電報往復〉(1988), 1895년 10월 26일발. 《尹致昊日記》4, 76~80쪽.

金允植,《續陰晴史》上(國史編纂委員會, 1966), 379零.

고종의 비탄도 위무하자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측의 목적은 달랐다.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조선을 자주독립시켰다'는 선전임과 동시에 을미사변 이후의 사태를 호도하려는 것이었다. 5) 청일전쟁을 '조선을 위한義戰'이라 한 것과 맥락이 같다. 이렇게 볼 때 황제즉위건에 대한 고종의 거부는 일본의 압제에 대한 저항이었고, 열국 외교관의 성토는 일본이 조선에서 마음대로 독주하는 것에 대한 견제였던 것이다. 6)

이로부터 얼마 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자 황제즉위건은 재등 장한다. 이번에는 이를 주장한 쪽이 과거와 달랐다. 김옥균을 암살한 洪鍾宇 등이 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임시 왕궁시대(아관파천 당시를 말함)에 프랑스로부터 귀국한 홍종우는 일찍이 奇計로써 김옥균을 상해에 유인하여 살해하였듯이 기지에 능하였는데, 그는 프랑스(에 다녀온) 선물로 황제즉위식을 거행할 것을 진언하였다. 반역변 란당의 화로 과거 일년간 공포와 우울 속에 잠겨있던 국왕에게 제공된 홍종우 의 프랑스 선물은 暗夜의 燈火였다(菊池謙讓,《近代朝鮮史》下,京城:鷄鳴社, 1939, 478~481쪽).

홍종우는 일찍이 일본을 방문(1888~1890)하였고 프랑스에 유학(1890. 12~1893. 7)한 바 있는 신지식인, 나름대로는 국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화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개화의 모델은 일본이아니라 서구 유럽, 그 중에서도 제정시대의 프랑스였다.7) 이렇게 김옥균과홍종우 양인의 정치적 입장과 구상은 달랐지만, 황제즉위가 필요하다고 본점은 같았다. 사실 친일파와 친러파 모두 정파는 다르지만 황제즉위 자체를필요하게 여긴 것은 마찬가지였다.8) 그러나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피신해

⁵⁾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清季中日韓關係史料》8(臺北, 1972), No. 3412.

⁶⁾ Allen to Olney, Nos. 160·161, Seoul, Oct. 17·19, 1895(Despatches from U. S. Ministers to Korea 1883~1905(이라 DUSMK로 칭함).

⁷⁾ 洪淳鎬,〈韓佛人士交流와 프랑스 顧問官의 來韓〉(《한불수교100년사》, 韓國史 硏究協議會, 1986), 112~113쪽.

조재곤,〈大韓帝國期 洪鍾宇의 近代化 改革論〉(《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論叢》, 一潮閣, 1992).

⁸⁾ 고종의 칭제건에 대해서는 '친일내각' 인사들뿐 아니라 '친로내각' 인사들도

있던 비정상적 상황에서 역시 이 문제가 구체화되기는 어려웠다.

결국 고종의 황제즉위건이 정부측에 의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어 간 것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明禮宮(경운궁, 현재의 덕수궁)으로 환궁(1897. 2. 20)한 이후이다. 그해 5월(음력 3월) 前郡守 鄭喬와 前承旨 李最榮을 비롯하여儒學 沈宜承・權達燮・姜懋馨, 議官 任商準 등이 황제즉위를 요청하는 상소를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구주 각국에서 황제와 군주의 위치가 평행하고 그 높음도 대략 같으니 改號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동서양 국가의 位號와 관습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하필 東亞의 좋은 청호를 두고 서구의 관습을 따르겠는가. 토지가넓지 않고 藩屬을 두지 않았으면 거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망령된 주장으로 족히 번론할 것도 없다.…제국은 구역의 넓고 좁음이나 附屬의 유무에 무관한 것으로 혹자가 支那를 통일한 연후에나 의논할 수 있겠다하는 것은 俗儒의 어리석은 주장이다. 외국의 인정여부에 관한 의문은 만국통행의 공법을 알지 못하는 자의 말이다. 萬國公法을 보건대 존호는 각국이 자주로 하는 것이며, 타국은 이를 좇아 인정할 뿐이니 타국이 인정하고 아니함은 논할 것이 못된다. 동아의 대국인 청국과 일본은 모두 이런 존호를 쓰는데 오직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거행하지 않고 있어 동양국면에 크게 관계가 있다(鄭喬,《大韓季年史》上,國史編纂委員會, 1957, 161~162쪽).

이같은 맥락의 상소는 그해 10월초까지 이어졌다. 그 내용은 대체로 앞서와 같은 내용이었다.

첫째, 皇·帝·王은 비록 글자는 다르지만 한나라를 자주하고 독립하여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뜻을 지닌다. 帝位에 오르신다 하여도 萬國公法상조금도 구애됨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의논하여 대책을 세우시고 황제의 尊號를올림으로서 尊君하는 輿情에 부응하시고 문약·의부하는 습관을 깨뜨려야 할 것이다.

둘째, 갑오경장 이후 독립의 이름만 있고 독립의 실이 없다. …우리 나라 국

원했다(《尹致昊日記》4, 123쪽; Nelson M. Frederic, *Korea and The Old Orders in Eastern Asia*, Batom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46, p. 235; 러시아大藏省編,《國譯 韓國誌-本文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42쪽).

민이 문약한 성품으로 의부하는 성습이 멀리는 이천 년, 가까이는 오백 년으로 이를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나라의 의관문물이 모두 明의 제도를 좇아 그 統을 이었다. 따라서 位號를 바로 세우는 일이 불가할 것이 없다. 청이 우리와 동양에 처해 있는 것은 독일·오스트리아가 로마와 인접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네째, 우리 나라가 자주독립국임은 만국이 공인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하지 못하는가. 우리 나라 강토는 한·당의 옛 땅과 관계있고 의관문물은 송·명의 제도를 모두 좇았으니 그 계통을 접수하여 그 존호를 쓴다해도 불가할 것이 없다.

다섯째, 혹자는 말하기를 왕이나 군은 한 나라를 다스림을 말하고 황제는 여러 나라를 다스림을 말한다 하여 영토를 개척하고 백성을 늘려 여러 나라를 통합한 상태가 아니면 황제칭호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三韓을 통합한 것이고 육지강토는 4천리요 인구는 2천만에 모자라지 않는다. 오늘날 폐하의 신민된 자가 지존한 존호를 씀에 누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가(《高宗實錄》권 35, 광무 원년 9월에서 10월초 참조).

이상에서 보듯이 '황제의 존호를 씀으로써 문약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 갑오경장 당시 밝힌 자주독립의 이름을 황제즉위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자는 것, 우리 나라가 漢·唐·宋의 계통을 이은 明나라의 문물을 좇았으니 그 정통을 이은 나라로서 황제의 존호 사용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9)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없지 않았다. 보수유생과 서구지향적인 신지식인들의 논리가 그러하였다. 먼저 崔益鉉·柳麟錫 등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던 보수유생들은 尊華攘夷의 관념에 근거하여 고종의 황제즉위건에 대해 비판하였다. 즉 중화의 문명을 이은 우리의 의관문물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하며, '서구의 의례에 따라 존호를 바꾸는 것'은 짐승의 제도를 취하는 것으로서, 소중화의 나라에서 황제즉위를 한다는 것은 망령되이 스스로를 높이는행위라는 것이었다.10)

한편 尹致昊와 같은 서구지향적인 신지식인의 논조도 비판적이었다. 다만

^{9) 《}高宗實錄》 권 35. 건양 2년 5월 1 · 9 · 16 · 26일.

 ^{42 (10)} 崔益鉉、《勉菴集》(麗江出版社, 1990), 89~91
42 (1975), 62~65・83~84・278
43 (1975), 62~65・83~84・278

보수유생들과는 논리가 달랐다. 윤치호는 황제즉위란 서구의 열강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치이며, '외국 군대가 왕궁을 침입하여 국모를 시해하는 마당에 서구 열강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같은 행사에 재정을 낭비하기보다는 국정의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자주독립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었다. 즉 빈약한 정부의 재정을 낭비하는 '외화내 빈'의 행사보다는 내정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11)

《독립신문》에서도 비슷한 논조가 우회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즉 '나라가 자주독립 되는 데는 꼭 대황제가 계셔야 자주독립 되는 것은 아니다. 왕국이라도 황국과 같이 대접을 받으며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지금 조선에 제일 긴요한 것은 자주독립의 권리를 잃지 아니하여야 할 터인즉, 관민이 대군주폐하가 황제 되시는 것을 힘쓰는 것도 옳거니와 제일 자주독립권리를 찾으며지탱할 도리를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다.12) 이것 역시 황제즉위식과 같은행사보다는 자주독립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뜻이었다.

그러자 반론이 제기되었다. 張志淵・鄭喬 등 '동도서기'적 입장을 가진 지식인들의 논리가 그러하였다. 이들은 보수유생들의 논리는 너무 고루하고, 윤치호 등의 논리는 시대를 너무 앞질러 간다고 보았다. 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망령된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하였고, 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청・일 모두 황제・천황을 칭하는데 우리만이 왕(당시 대군주폐하)을 칭하여 비하할 이유가 없으며, 황제가 없으면 독립도 없다는 일반인의 인식을 고려할 때, 우리 군주의 존호도 황제로 높여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13)

고종이나 정부측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은 장지연·정교와 같은 지식인들의 논리였다. 그럼에도 정부측에서는 한동안 황제즉위건을 보류해 두고 있는 듯하였다. 황제즉위를 요청하는 상소도 5월 이후로는 한동안 뜸하였

^{11)《}尹致昊日記》4,72~75쪽·5,88~120쪽.

^{12) 《}독립신문》, 광무 원년 10월 2일, 논설.

¹³⁾ 張志淵,〈辨贊正崔益鉉論皇禮疏〉(《韋庵文稿》3, 國史編纂委員會, 1971), 90~91\. 鄭喬,《大韓季年史》上, 160~162\.

다. 여론이 무르익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다른 한편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열국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탐문하였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각국은 '이 일이 조선의 자주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¹⁴⁾ 이후 정부측에서는 본격적으로 일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상의 전과정을 놓고 볼 때 고종의 황제즉위건은 조야의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측이 추진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핵심에 위치하고 있었던 고종의 생각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고종은 일찍이 황제즉위건에 대해 관심이 적지 않았다. 고종으로서는 청국과 일본 등 외세의 압제에서 시달리면서 거듭 국가적 위기와 신변의 위협을 경험한 바 있었으며, 게다가 2년 전왕비를 비명에 잃은 슬픔을 지워버리기가 어려웠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고종으로 하여금 황제로의 즉위를 모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황제즉위건에는 그동안 위축되어 온 군권의 회복, 비명에 간 왕비를 위무하려는 소박한 열망, 그리고 나라의 총력을 모아 내외의 위기에 대응하자는 구상 등이 두루용해된 것이었다.15)

이상에서 보듯이 황제즉위에 관한 주장은 초기의 몇몇 인사들로부터 전현 직관료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에 관한 논의는 고종이 환궁한 한두 달 뒤부터 수개월간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황제즉위의 필요성이 논리적으로 정리되고,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하나 하나 비판하는 등 대체로 여론수렴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해 보자는 고종과 정부측의 구상이 깊게 배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그해 8월 연호가 제정되고, 10월초에 정부백관의 상소가이어지면서 마침내 고종도 황제즉위건에 대해 재가를 하였다(10.3). 황제즉위식 거행일도 그달 12일(음력 9월 17일)로 확정되어 이 문제는 최종 결말을보기에 이르렀다.

^{14)《}清季中日韓關係史料》8, No. 3439, 5050\.

¹⁵⁾ 위와 같음.

[《]尹致昊日記》5,98~99\.

Allen to Sherman, No. 18, Seoul, Oct. 14, 1897, DUSMK.

2) 고종의 황제즉위식

고종의 황제즉위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연호의 제정과 圜丘壇16)의 설치 그리고 환구단에서의 황제즉위식 행사 등이다.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 대 왕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가 중국의 연호를 썼다. 중국의 천하 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래 중국은 동양의 중심적 역할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였고, 청일전쟁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 결과 조선도 1896년에는 建陽이라는 새 연호를 쓰게 되었다. 그 점에서 조선은 청국으로 부터 '독립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선의 독립'이란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청국의 간섭은 벗어났다 하여도 일본의 간섭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양이란 연호의 채택도 일본의 간섭하에서 진행되었고, 主上殿下를 大君主陛下로, 王妃殿下를 王后陛下로, 王世子低下를 王太子殿下 등으로 변경한 것도 그러하였다.17) 이를 두고 '우리 역사상에 등장한 적이 없는 기이한 명칭'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18) 결국 아관화천과 환궁 등을 거치면서 조선이 일본의 구속을 잠시 벗어난 사이에 문제의 연호와 존호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얼마 후 沈舜澤이 議政에 임명되어 황제즉위식에 관한 의례와 그때까지 장례를 미루어 두었던 왕비의 장례식 준비에 착수하도록 명을 받았다. 그가 光武와 慶德 두 개의 안을 놓고 建元건을 상주하자, 광무가 새 연호로 확정되었다(1897. 8. 16).¹⁹⁾ 광무라는 새 연호에는 모든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힘을 기르고 나라를 빛내자는 의미가 있었다.

연호를 제정한 뒤 9월에 들어서면서 정부관료들이 고종의 황제즉위를 요

¹⁶⁾ 환구단은 원구단이라고도 읽는다. 그러나 1897년 당시의 《독립신문》에서는 환 구단으로 거듭 쓰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당시의 표현을 따라 환구단으로 표기 하였다(《독립신문》, 광무 원년 10월 12일, 논설).

^{17) 《}官報》, 개국 503년 12월 12일.

^{18) 《}清季中日韓關係史料》8, No. 3430, 5040\.

^{19) 《}官報》, 건양 2년 8월 14 · 17일.

청하는 상소를 다시 올렸다. 관료·유생들의 상소를 바탕으로 심순택과 趙秉世·朴定陽·南廷哲 등이 고종을 알현하여 거듭 황제로 즉위할 것을 진언하였고, 李秀丙 등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도 이어졌다. 아홉 번의 사양 끝에 고종은 마침내 이를 재가하였다. 아홉이란 숫자는 동양적 의미로는 가장 큰수, 사양할 만큼 사양했다는 뜻이니 다분히 의식적이었다.20)

즉위식 행사는 11일에서 12일에 걸쳐 행해졌다. 황제즉위를 경축하는 태극기가 장안에 물결치는 가운데 치러졌다. 장소는 '환구단', 서울의 南署 會賢坊 小公洞契였다.²¹⁾

원래 환구단은 천하를 다스리는 지상의 황제가 천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이니 원칙적으로는 황제의 나라에만 존재한다.22) 그럼에도 우리 나라에서 '圜丘祭'가 제도화된 것은 고려 성종대부터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 전기에 행해졌던 환구단에서의 제천행사는 고려 말기에 와서 背元親明策을 취한이후 명나라 사신의 혁파종용과 당시 신진사류층의 성리학적 명분론 등에의해 폐지되고 말았다. 조선왕조의 건국 이후로도 태종 및 세조 때 기우제등의 경우에 방편적으로만 거행된 것 외에는 환구제를 국가적 행사로 거행할 수 없었다.23)

이처럼 중국을 의식하여, 혹은 주자학적인 명분론에 입각한 중화사상에 의해 조선왕조 5백년 동안 행해지지 못했던 제천행사를, 이제 황제즉위식과 함

^{20)《}高宗實錄》권 35, 광무 원년 9월 25~30일. 《大韓季年史》上, 162쪽.

²¹⁾ 현재 소공동에 위치한 웨스틴조선호텔(Westin Chosun Hotel) 자리이다. 환구 단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高宗實錄》 36, 광무 원년 9월 21일 · 29일, 10월 1 일·12일조 및 《官報》, 광무 원년 9월 21일·10월 4일〈宮廷錄事〉등을 참조.

²²⁾ 그의 원형은 현재 북경성의 동남부에 위치한 방대하고도 웅장한 규모의 天壇에서 잘 느껴볼 수 있다(望天星·曲維波編,《天壇》,北京:中國世界語出版社, 1996).

²³⁾ 韓佑劤, 〈朝鮮王朝時代에 있어서의 儒教理念의 實踐과 信仰·宗教〉(《韓國史 論》3, 1976).

金泰永,〈圜丘壇〉(서울市史編纂委員會,《서울市六百年史-文化史蹟篇》, 1987), 201 ~204等.

平木實、〈朝鮮半島における王權-朝鮮王朝時代を中心に〉(松原正毅編、《王權의 位相》, 弘文堂, 1991).

께 환구단에서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완성된 환구단의 모습을 《독립신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였다.

이전 남별궁 터전에 단을 모았는데 이름을 환구단(圜丘壇)이라고도 하고 황단(皇壇)이라고도 하는데 역군과 장색 천여 명이 한달이 못되어 거의 다 건축을 하였는데 단이 삼층이라. 맨 밑층은 장광이 영척으로 일백 사십 사척 가량인데 둥글게 돌로 쌓아 석자 길이 높이를 쌓았고, 제이층은 장광이 칠십 이척인데 밑층과 같이 석자 높이를 쌓았고, 맨 윗측은 장광이 삼십 육척인데 석자길이로 둥글게 높이를 쌓아서 올렸고, 바닥에는 모두 벽돌을 깔고 맨 밑층 가으로는 둥글게 석축을 모으고 돌과 벽돌로 담을 쌓았으며 동서남북으로 황살문을 하여 세웠는데 남문은 문이 셋이라. 이 단은 금월 십이일에 황제폐하께서친행하시어 거기서 백관을 거느리시고 황제위에 나아가심을 하느님께 고하시는 예식을 행하실 터이라(《독립신문》, 광무 원년 10월 12일, 논설).

이상으로 보아 이때의 환구단은 규모는 작았지만, 대체로 명대와 청대에 걸쳐 중국 천자의 제천행사에 쓰였던 북경의 환구단 형태를 따른 것이었다. 24) 황제즉위식 광경은 서울의 내외국인들에게 좋은 구경거리였다. 먼저즉위식 전날의 광경에 대해 《독립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십일일 밤 장안의 사가와 각 전에서는 등불을 밝게 달아 길들이 낮과 같이 밝았다. 가을 달 또한 밝은 빛을 검정 구름 틈으로 내려 비쳤다. 집집마다 태극 국기를 높이 걸어 애국심을 표하였고, 각 대대 병정들과 각처 순검들이 만일에 대비하여 절도있게 과수하였다. 길에 다니던 사람들도 즐거운 표정이었다. 십이일 새벽에 공교히 비가 왔다. 의복들이 젖고 찬기운이 성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사를 즐거워하는 마음에 젖은 옷과 추위를 개의치 않고 질서 정연히 각자의 직무를 착실히 하였다. 십일일 오후 두시 반 경운궁에서 시작하여 환구단까지 길가 좌우로 각 대대 군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었다. 순검들도 몇백 명이 틈틈이 벌려 서서 황국의 위엄을 나타냈다. 좌우로 휘장을 쳐 잡인 왕래를 금하였고 옛적에 쓰던 의장등물을 고쳐 황색으로 만들어 호위하게 하였다. 시위대 군사들이 어가를 호위하고 지나갈 때에는 위엄이 웅장했다. 총끝에 꽂힌 창들이 석양에 빛을 반사하여 빛났다. 육군장관들은 금수로 장식한 모자와 복장을 하였고, 허리에는 금줄로 연결된 은빛의 군도를 찼다. 옛 풍속으로 조선군복

²⁴⁾ 북경의 天壇은 북쪽에 위치한 新年殿과 皇乾殿, 남쪽에 위치한 환구단과 皇穹 宇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望天星·曲維波編, 앞의 책 참조)

을 입은 관원들도 있었으며 금관조복한 관인들도 많이 있었다. 어가 앞에는 대황제의 태극국기가 먼저 지나갔고, 대황제는 황룡포에 면류관을 쓰고 금으로채색한 연을 탔다. 그 뒤에 황태자가 홍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채 붉은 연을타고 지나갔다. 어가가 환구단에 이르자 제향에 쓸 각색 물건을 둘러보고 오후네시쯤 환어하였다(《독립신문》, 광무 원년 10월 14일, 논설).

이어 황제즉위식은 다음날 새벽에 고종이 다시 환구단에 나아가 천신에게 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십이일 오전 두시 다시 위의를 갖추어 황단에 가서 하느님께 제사하고 황제위에 나아감을 고했다. 황제는 오전 네시반에 환어했다. 동일 정오 십이시에 만조백관이 예복을 갖추고 경운궁에 나아가 대황제폐하께와 황태후폐하께와, 황태자전하께와 황태비전하께 크게 하례를 올리니 백관이 즐거워들 하더라(《독립신문》, 광무 원년 10월 14일, 논설).

환구단에서의 황제즉위식 행사는 동양의 전통적인 양식에 서양의 양식이 일부 혼합된 모습이었다. 이러한 행사는 한・당・송・명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우리 나라가 직접 계승하여 衣冠文物과 典章制度를 모두 皇明의 遺制를 따랐다고 주장하던 관료와 일부 유생들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내용이었다.25) 즉 한편으로는 만국공법 질서하의 자주독립한 나라라는 근대적 의식, 다른 한편으로는 명나라의 정통을 우리 스스로가 이었다는 '주체적 중화의식'이 뒤섞여 있었다.

이로써 비록 취약하기 짝이 없었지만, 한국사상 초유의 황제국이 탄생하였다. 《독립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광무 원년 시월 십이일은 조선사기에서 몇 만년을 지내더라도 제일 빛나고 영화로운 날이 될지라. 조선이 몇 천년을 왕국으로 지내어 가끔 청국에 속하여 속국대접을 받고 청국에 종이 되어 지낸 때가 많더니…이달 십이일에 대군주폐하께서 조선사기 이후 처음으로 대황제 위에 나아가시고 그날부터는 조선이 다만 자주독립국뿐이 아니라 자주독립한 대황제국이 되었으니…어찌 조선인민이되어…감격한 생각이 아니 나리오(《독립신문》, 광무 원년 10월 14일, 논설).

^{25) 《}高宗實錄》 권 35, 광무 원년 10월 10일.

3. 대한제국의 성립과 열국의 반응

1) 국호 '대한'의 제정과 반포

황제즉위식이 거행된 다음날 조정에서는 朝鮮이란 국호를 大韓으로 변경하여 마침내 大韓帝國을 선포하였다. 국호를 결정한 것은 고종과 대신들이었다. 국호를 대한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고종과 대신들의 주장은이러했다.

나라는 옛 나라이나 천명을 새로 받았으니 이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합당하다. 삼대 이래로 황제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없다. 조선은 箕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大韓이란 이름을 살펴보면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이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 한이란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나라 이름이며, 우리 나라는 마한・진한・변한 등 원래의 삼한을 아우른 것이니 큰 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다(《高宗實錄》권 35, 광무 원년 10월 11일).

요컨대 우리 나라는 마한·진한·변한 등 원래의 삼한을 통합한 것이니 큰 한, 곧 대한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며, 조선왕조의 조선이란 이름은 중국에 의해 기자가 봉해졌던 땅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당한 제국의 명칭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직후 정부에서는 이를 곧 국민에게 알렸다. 《독립신문》의 영문판과《한국휘보》등에서 이 내용을 내외국인에게 상세하게 보도했다.

금월 십삼일에 내리신 조칙으로 인연하여 조선국명이 大韓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조선 인민이 대한국 인민이 된 줄로들 아시오(《독립신문》, 광무 원년 10월 16일, 논설).

이로써 과거 오백년 동안 중국에 사대조공을 해온 조선왕국은 1897년 10월 12일 조용히 막을 내렸고, 한국사상 최초로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탄생

하였다. 당시 《한국휘보》에서는 이를 두고 '조용한 변화'라 하였다. 즉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는 침략자의 발자국 소리나 반역자의 함성, 산을 울리는 포성, 침략자들의 요란한 횃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일어난 의미심장하고도 기대에 부푼 변화라는 것이었다.1)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환구단 등 각종의 의례는 천자국의 그것에 준하여 변경되었다. 즉 종래 南壇에서 제사를 지내온 風·雲·雷·雨의 神을 환구단으로 옮겨오고, 사직단에 모시던 國社‧國稷의 神位를 太社‧太稷으로 높여반들게 되었으며, 황제즉위시 행차한 경운궁 즉조당의 편액은 태극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왕이 입던 자주색 곤룡포도 황색으로 바뀌었고,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고 역대의 고사에 따라 전국의 죄인들에 대해 大赦合을 내렸다.2) 아울러 故민비는 명성황후로 추존되어 다음달 황후의 예로 장례를 치렀다. 이후 정부에서는 國歌와 황제의 御旗‧親王旗‧軍旗 등을 제정했으며, 황제를 대원수로 한 프러시아식 복장과 관복을 제정하여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상징물도 제작하였다.3)

2) 열국의 승인

국제법상 한 나라의 성립 자체는 선포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대한제국의 성립 여부는 사실상 다른 나라의 승인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 자체는 나라의 체면을 높이자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런 만큼 고종과 정부로서도 각국의 호의적 관심과 승인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한제국을 선포한 직후 서울 주재 각국 대표에게 이를 알려 본국정부의 승인 여부를 회답하도

¹⁾ The Korean Repository, Vol. 4, 1897, pp. 385~400.

^{2)《}舊韓國官報》, 광무 원년 10월 11일〈宮廷錄事〉. 李玟源, 앞의 글(1988).

황제즉위의 의례에 대해서는 奧村周司과 月脚達彦의 앞의 글 참조. 단 이들의 글에서는 청국과의 종속관계를 파기한 것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 아 쉽다.

³⁾ 宋炳基, 앞의 글.

록 촉구하였다. 그러므로 각국 정부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각국 대표의 솔직한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였다.⁴⁾ 알렌(Horace N. Allen)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하다.

일본측은 전에 이 조치를 주장하였지만, 근래에는 반대하여 온 것으로 안다. 러시아측은 전에 이에 반대하였지만, 이제 그 반대를 철회하였음이 틀림없다. 독일과 영국 대표는 이를 반기지 않고 있다(Allen to Sherman, No. 14, Seoul, Oct. 5, 1897, DUSMK).

황제즉위식 참석 여부를 놓고 서울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간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나, 각국 정부가 이의 승인 여부를 놓고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소간 뜸을 들인 것도 이같은 입장과 무관하지 않았다. 5) 이러한 반응을 보인 원인은 대한제국 선포 자체가 각국으로서는 그다지 달가울 것이 없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모든 주변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 간섭하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서구 각국의 외교관들은 대한제국의 선포를 '1루불의 가치만도 못하게 여긴다'거나 '동전 한닢만도 못하게 여긴다'고도 하였다. 주한일본공 사의 보고에서는 고종의 황제즉위 추진과 왕비의 황후례에 따른 장례식 계 획을 '浮華虛飾의 망상'이라고까지 하였다.6)심지어 일본의 어느 신문에서는 대한제국의 선포에 대해 우롱하는 기사까지 실었다.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과연 대한이 독립국이냐'는 것이었다.7)

그러자 《독립신문》에서는 그같은 일본 언론의 내용은 헐뜯기 좋아하는 글 쟁이의 말이라고 반박하였다.

⁴⁾ 각국의 반응 부분은 일·영·미·러·프·청·독 등 각국의 자료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란스럽다. 이 중 미·청·영측의 기록은 대체로 일치하고, 일·러·프측 기록은 앞뒤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

⁵⁾ Allen to Sherman, No. 18, Seoul, Oct. 14, 1897, DUSMK.

^{6)《}駐韓日本公使館記錄》7,〈機密本省來信〉(國史編纂委員會, 1989), 明治 30년 9 월 27일, 機密第61號 王妃葬式延期ノ原因.

⁷⁾ The Independent, 1897년 10월 21일.

대한은 약소국이기는 하나 남의 속국이 아니다. 벨기에나 희랍·화란·터키나 마찬가지이다. 대한은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인민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다(*The Independent*, 1897년 10월 21일).

그러나 이같은 비공식적 차원의 비방과는 별도로 각국은 대한제국의 성립을 직·간접으로 승인하였다.

먼저 일본은 신속히 '대한제국황제'를 지칭하면서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 제국 선포를 간접적으로 승인하는 의사를 표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 직후 한동안은 대외적 선전을 위해 고종의 황제즉위를 종용하기도 하였지만, 아관 파천 이후 상황이 바뀌자 태도를 바꾸어 이를 반대하였다. 일본은 특히 고종의 환궁 이후 진행되는 황제즉위 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황제즉위건을 부화허식의 망상이라고 비방하였고, 일본외상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주한일본공사에게 조선의 황제즉위건 추진을 철회하도록 공작하게 한 일도 있다.8)

그러나 일단 황제즉위가 실현되자 일본은 입장을 바꾸었다. 한국정부에서는 대한제국 선포 직후 민비를 명성황후로 추존하여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일본에서는 주한변리공사 가토 마스오(加藤增雄)를 특사로 임명하였다. 장례식에 참석한 가토는 조선의 대신들에게 냉대를 받았다. 명성황후시해사건과 그 이전 일본의 만행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그러자 가토는 천황의 조위국서를 전하였다. 국서에는 '대한국대황제폐하', '대황후폐하'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다. 고종과 대신들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승인했다 하여 그에 대한 냉대를 누그러뜨렸다. 의일본의 대한제국 승인 소식은 즉시 한국의신문에 실렸다. 일본은 누적된 한국민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한국정부의

⁸⁾ Lowther to Salisbury, No. 125, Tokio, Oct. 1, 1897. F. O. 405-Part X. 주 한영국영사 조단은 2년전(1895)에 일본의 고무에 의해 이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모두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고하고 있다(Jordan to MacDonald, Inclosure 1 in No. 142, Seoul, Oct. 5, 1897, F. O. 405-Part X).

^{9) 《}高宗實錄》권 36, 광무 원년 11월 22일. 黄玹, 《梅泉野錄》, 220~221쪽. Allen to Sherman, No. 34, Seoul, Nov. 13, 1897, *DUSMK*.

반감을 무마하려던 목적을 일부나마 이룬 셈이었다.10)

다음으로 러시아·프랑스 양국은 일본측의 애매한 표현과 달리 대한제국 선포를 공식문서를 통해 명쾌하게 승인하고 축하하였다. 앞서 고종은 러시아 의 국호 명명일에 즈음하여 이를 축하하는 전문을 러시아에 보냈고, 러시아 황제(니콜라이 2세)는 '대한국대황제폐하'의 호의에 감사한다고 회답해 왔다 (12. 19). 얼마 후 러시아황제는 다시 공문을 보내어 고종의 황제즉위를 축하 하고 승인한다고 표명하여 한국 조정을 기쁘게 하였다.¹¹⁾ 러시아공사와 보조 를 맞추던 주한프랑스공사 플랑시(V. Collin de Plancy, 葛林德)도 고종의 황제 즉위를 승인, 축하한다는 프랑스정부의 공문을 전하였다.¹²⁾

러시아로서는 대한제국 선포가 자국의 간섭을 벗어나자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 불만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선포는 러시아측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러시아가 한국에서 우위를 확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한 것은 러시아가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기여했다는 선전효과도 있었고, 한국은 자주독립국이니 러시아 외에 더 이상 다른 외국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뜻도 지닌다고 보았다. 아관파천 이전에 일본이 취했던 태도나 마찬가지로 '二重論理'를 가지고 있었다.13 당시 러시아의 군사고문과 재정고문 고빙문제로 한국조정을 뒤흔들어 놓고 있던 주한러시아공사 스페이에르(Alexis de Speyer)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결정적으로 제지하지 않

¹⁰⁾ Allen to Sherman, No. 34, Seoul, Nov. 13, 1897, *DUSMK*. 《駐韓日本公使館記錄》7,〈本省往來信〉,明治 30년 10월 18일,發第64號 大君主陛下へ謁見幷ニ稱號ニ關スル御祥文送附ノ件 및〈機密本省往復〉,明治 30년 10월 28일,機密第73號 王妃葬式期幷ニ參禮者ニ關スル意見書.

^{11) 《}官報》, 광무 원년 12월 30일.

[《]舊韓國外交文書》 ,〈俄案〉1(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68)(이하《俄案》1 의 형식으로 표기함), No. 953, 1897년 12월 31일, 土貝耶→趙秉式, 皇帝位號의 致賀.

Allen to Sherman, No. 54, Jan. 2, 1893, *DUSMK*. 鄭喬、《大韓季年史》上, 171\等.

^{12) 《}法案》 1, No. 867, 1898년 3월 5일, 葛林徳 → 閔種默, 皇帝位號上請通告件에 대한 致賀回信.

¹³⁾ Nelson, *Op. cit,* pp. 235~240. 李玟源, 앞의 글(1985), 134~135쪽.

았던 것도 바로 그 점에 이유가 있다.14)

그 다음으로 영국의 경우는 공식적인 입장의 표명이 뚜렷하지 않았다. 다만 자국의 외교적 이해와 관련하여 다음해 3월 주한영국총영사 죠단(Jordan)의 직함을 공사로 승임시킨 것이 주목되는 일이었다. 그 동안 한국정부에서는 영국이 상주 외교대표급이 아닌 총영사를 파견한 데 대해 정규대표의 파견을 촉구한 바 있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프랑스는 서울에 공사(Minister)급외교관을 파견하고 있었고, 일본과 미국도 대리공사(Charge's d'Affaires)급의외교관을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는 영국정부가 한국을 낮게 본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주한영국영사도 서울에서 타국 외교관에 비해 서열이 낮고 한국정부 측에도 그렇게 비쳐져 자신의 업무수행이 적지 아니 지장을 받고 있었다. 가령 1897년 가을 러시아의 고위 세무관리 알렉시에프(Kir Alexeiev)가 서울에온 이후 브라운의 해고문제로 논란이 되었을 때 조단은 다른 나라 외교관들처럼 외교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데 불편이 없지 않았다. 게다가 고종을 알현하는 것조차 러시아측의 방해를 받았다.

그 외에도 조단으로서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령 서울 주재 영국영사는 북경주재 영국공사를 거쳐 영국의 외무성에 업무를 보고하고 또한 북경의 영국공사를 통하여 본국의 훈령을 받았다. 결국 조단은 주한 영국외교대표부의 격이 낮은 데 대한 한국정부의 경시와 외교업무 수행상의 불편 등을 이유로 공사로 승임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⁵⁾ 이에 영국정부는 마침내 주한외교관을 영사급에서 공사급으로 승임시켜 주었고, 한국정부도 영국이 한국을 이전보다 중시한다고 여겨 만족해 하였다.¹⁶⁾

다음으로 미국의 반응을 보자. 미국은 고종의 황제즉위에 대한 열국의 반응과 동정을 즉시 보고하라 지시할 만큼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이 승인했다는 보고를 접한 후에도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이었다.17)

¹⁴⁾ 李玟源, 위의 글,

¹⁵⁾ MacDonald to Salisbury, No. 78, Peking, Feb. 16, 1898, F. O. 405-Part XI.

^{16) 《}英案》1, No. 1333, 1898년 3월 9일, 朱邇典→閔種默, 朱總領事의 公私陞任事. Allen to Sherman, No. 84, Seoul, March 11, 1898, *DUSMK*.

¹⁷⁾ Sherman to Allen, No. 25, Washington, Nov. 30, 1897, Diplomatic Instructions

이에 한국의 외부대신이 미국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누차 촉구하자 알렌 공사는 난처한 입장이었다. 알렌은 '우리 정부에서는 기꺼이 황제의 존호사용을 승인하였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고종에게 축하를 하도록 훈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궁색한 답변을 반복하였다.¹⁸⁾ 그러나 알렌의 말은 어디까지나본국의 방침을 헤아려 스스로 한 표현에 지나지 않았고, 그때까지 당시 미국무부에서 그러한 지시를 내린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대원군의 薨逝에 대하여 미국대통령이 보낸 조위전문에서 '대황제폐하'를 언급함에 이르러서야 미국정부의 간접적인 승인을 확인하였다.¹⁹⁾ 그후 미국정부는 입장표명을 거듭 요청한 알렌의 보고를 접한 뒤 1898년 3월 29일자의 훈령에서 공식축하의 뜻을 한국정부에 전하도록 알렌에게 지시하였다.²⁰⁾ 알렌의 직함은 1900년에 가서 약간의 수정을 보게 된다. 즉 '大美欽命駐箚朝鮮便宜行事大臣兼總領事 安連'이로 변경된 것이다. 韓國이라는 국호 대신 漢城으로 슬쩍 대치한 것이 흥미롭다.²¹⁾

독일의 경우는 황제즉위건에 대해 직접적인 승인의 행위나 축하의 의사표 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주한외교대표의 직함 중 조선을 계속해서 고집했던 미국과 달리 이를 한국으로 고쳐 씀에 따라 간접적인 승 인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한국정부와도 별다른 마찰은 보이 지 않았다.

끝으로 청국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청국은 대한제국 선포에 대해 솔직하게 거부반응을 보였다. 청국은 고종의 황제즉위를 '妄自奪大'라고 비난하면서 청일전쟁의 패배보다 더욱 모욕적인 일로 여겼다.²²⁾ 청국정부는 청일전쟁 당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U.S. Ministers to Korea, 1883~1905(National Archives M. F. Record Group No. 77: 이하 DIDUSMK로 청합).

¹⁸⁾ Allen to Sherman, Nos. 34 · 50 · 54 · 56 · 72, Nov. 13, Dec. 23, 1897, Jan. 2, Feb. 12, 1898, *DUSMK*.

¹⁹⁾ Allen to Sherman, No. 72, Seoul, Feb. 12, 1898, DUSMK.

^{20)《}美案》2, No. 1696, 1898년 12월 26일, 安連→閔種默, 大院君薨逝에 대한 美大統領弔電傳達의 件.

Sherman to Allen, No. 25, Washington, March 29, 1898, DIDUSMK.

^{21)《}美案》3, No. 2226, 1900년 10월 3일, 安連→朴齊純, 美人스웨러路照申請.

^{22)《}清季中日韓關係史料》8, No. 3412, 5009쪽 및 No. 3439, 5050쪽.

시 원세개가 서둘러 귀국하면서 실질적인 영사업무는 주한영국영사 힐리어 (Walter C. Hillier)와 조단 등에게 맡겨져 있었다. 1897년 2월초 唐紹儀가 總商董(총영사격)으로 비공식적으로 서울에 와서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과 청국의 양 국민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홍삼이나 비단 등 각종 물품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국은 청일전쟁 이래 방기된 무역업무에 대해 별도의 상무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²³⁾

그러나 새로이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대한제국정부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는 조약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이 문제를 놓고 청국조정에서는 의론이 분분하였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국상인의 보호를 위해 관계를 재조정하자는 이홍장 등 대신측과 감히 황제즉위를하다니 '괘씸하고 불쾌하다'는 공친왕 등 황실측 주장이 팽팽하게 교차되었다. 한동안 황실측의 주장이 우세하여 진전이 없었으나, 공친왕이 사망하자이홍장의 주장이 수용되어 마침내 대한제국 황제와 대청제국 황제의 명의로韓淸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1899).24)

이것은 한중관계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근 대적 조약이며, 전통적인 책봉체제의 유산을 양국이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한 점에 획기적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은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차원 이전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자는 고종의 개인적인 욕망이 그러한 조치에 내재해 있었고, 의식상으로도 전통적인 중화사상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문제점이 보인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와는 걸맞지 않게 이후 정부에 의한 개혁정책이 복고적으로 선회한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황제즉위식과 각종 의례의 변화에 따른 경비의 지출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다.

비록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대한제국 선포가 갖는 역사적 의의는 그

²³⁾ 李求鎔,〈朝鮮에서의 唐紹儀의 活動과 그 役割〉(《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 洋史學論叢》, 高麗苑, 1984).

²⁴⁾ 權錫奉, 〈清日戰爭 以後의 韓淸關係의 硏究(1894~1899)〉(《清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强》,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李求鎔, 앞의 글.

나름대로 존재한다.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한제국의 선포는 우리 나라가 전근대 중국 중심의 책봉체제로부터 탈피했음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란 점에 중요한 의미 가 있다. 비록 서구 열강에게는 현실적 구속력이 없는 조치였지만, 적어도 한국과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던 청국, 그리고 소중화의 관념에 젖 어 있던 일부의 유생과 다수의 일반에게는 그 자체가 적지 않은 충격과 자 극이었다. 전래의 화이관이나 소중화의식이 19세기까지도 엄존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그것은 나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 전환이었다.

둘째, 대한제국 선포는 국권이 외세에 잠식되어 가는 고립무원의 절망적상황에서 안으로는 군주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밖으로는 일본·러시아·구미국가 등 모두의 간섭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이루자는 뜻을 내외에 선언한점에서 현실적 의미가 있다. 동학농민군의 구호였던 '斥倭洋倡義', 의병의 구호였던 '斥邪衛正', 독립협회의 국권수호운동이나 《독립신문》·독립문의 명칭에 담겨있던 '自主獨立'의 표어와 넓은 맥락에서는 같았다. 외압에 대한 대응의 방식은 각 집단이 상이했지만, 국가의 자주독립을 열망한 점은 조야 모두가 같았던 것이다.

〈李玟源〉